

## 외국어특별학점인정에관한규정

2001.03.01.제정	2002.03.01.일부개정	2004.03.01.일부개정	2006.03.01.일부개정
2010.03.01.일부개정	2011.04.18.일부개정	2012.08.01.일부개정	2013.05.01.일부개정
2015.02.25.일부개정	2018.07.01.일부개정	2019.12.09.일부개정	<u>2021.06.01.일부개정</u>

**<학사관리팀>**

**제 1 조 (목적)** 본 규정은 동명대학교 「수업및학사운영규정」 제49조에 의하여 외국어과목에 대한 특별학점을 인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06.3.1., 2019.12.9.)

**제2조(인정대상과목)** ① 특별학점 인정 대상과목은 영어, 일본어, 중국어영역에 개설된 과목으로 한다. (개정 2010.3.1., 2013.5.1., 2015.2.25.)

② 인정대상 공인시험은 TOEIC, TOEFL, IELTS, TEPS, JPT, JLPT, HSK, CPT 8개 시험에 한한다. (개정 2013.5.1., 2015.2.25.)

**제3조(인정학점의 적용)** ① TOEIC, TOEFL, IELTS, TEPS, JPT, JLPT, HSK, CPT 8개로 인증 시험을 구분한다. (개정 2013.5.1., 2015.2.25.)

② 위 제1항의 영역별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적용하며, 적용에 있어 같은 영역 교과목은 중복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.(개정 2013.5.1., 2015.2.25.)

③ 인정학점은 외국어성적부여기준표 별표 1에 의한다.

**제4조(신청절차)** ① 학생은 매년 2, 8월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응시한 시험취득점수표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어특별학점인정신청서 [별지 제1호] 서식을 작성하여 학부교양대학에 제출하면 학부교양대학장은 [별지 제1호] 서식 인정내역란을 작성하고 매학기 취합결과를 **교무처장**에게 보고한다. (개정 2010.3.1, 2011.4.18, 2012.8.1, 2013.5.1., 2015.2.25., 2018.7.1., 2021.6.1.)

② 특별학점인정신청을 한 과목의 인정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. (개정 2006.3.1., 2015.2.25.)

**제5조(학점인정처리)** ① 학점인정을 신청한 학생은 출석, 시험 및 과제 등 모두를 면제받으며, 학부교양대학장은 학점인정신청을 한 학생의 시험점수를 외국어성적부여기준표 별표 1에 따라 해당과목 학점인정으로 처리한다. 단. 영어, 일본어, 중국어 학점인정 교과목은 재학기간 중 각 1회에 한하여 학점인정 처리하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(개정 2015.2.25., 2019.7.1.)

②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성적은 일반 수강과목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,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(개정 2015.2.25.)

③ 학점으로 인정받은 시험은 학점포기의 요건에 따라 포기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본 개정규정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이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 부칙 제1조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(개정 2004.3.1., 2006.3.1., 2010.1.1, 2011.4.18., 2013.5.1., 2015.2.25.)

## 외국어 성적부여 기준표

### 1. 영어 성적부여 기준표

공인시험환산점수기준표				학점인정
TOEIC	TOEFL [PBT/CBT/IBT]	IELTS	TEPS	
600이상	523/ 193/ 69이상	5.00 이상	482 이상	Pass

### 2. 일본어 성적부여 기준표

공인시험환산점수기준표		학점인정
JPT	JLPT	
400점이상	3급(N4)이상	Pass

### 3. 중국어 성적부여 기준표(신설 2013.5.1.)

공인시험환산점수기준표		학점인정
신HSK	신CPT	
5급(180점)	5급(650점) 이상	Pass

[별지 제1호 서식] (개정 2015.2.25., 2017.3.1.)

## 외국어 특별학점 인정신청서

학년도      학기

소 속	대학(학부) 학과(전공)			학 년	학년
학생성명				학 번	
인정대상 시험명		점수 /급수	( )점 ( )급	취득일자	년 월 일
			( )점 ( )급		년 월 일
			( )점 ( )급		년 월 일
<b>인정내역(학부교양대학장 기록)</b>					
인 정 교과목	영어		인정 교과목 코드		별도분반 배정치않 음
	일본어				
	중국어				
비 고					

위와 같이 “외국어특별학점인정에 관한 규정” 에 의하여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 청 자 : (인)  
 지 도 교 수 : (인)  
 학부교양대학장 : (인)

- \* 첨부서류 : 인증시험 자격증 사본 1통
- \* 한번 인정받은 공인점수는 타 과목에 이중으로 대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\* 담당교수는 성적표 뒤에 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.